

해 외 외 국 환 업 무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 업 종 ^{주1)}			④ 법 인 소 재 국		
⑤ 외 국 환 업 무 의 내 용					
⑥ 재 무 건 전 성 현 황 ^{주2)}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⑦ 국 제 신 용 등 급 현 황					
⑧ 신 용 공 여 약 정 체 결 현 황 ^{주3)}					
⑨ 업 무 용 계 좌 정 보 ^{주4)}		개설기관	계좌번호	계좌명	주계좌
	원 화				<input type="checkbox"/>
	외 화				<input type="checkbox"/>
	외 화				<input type="checkbox"/>
⑩ 동 일 그 룹 현 황 ^{주5)}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auto;">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auto;"> 신 청 인 (대 표 자) (서명) </div> <p style="margin-top: 10px;">기획재정부장관 귀하</p>					

주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 매매업, 투자중개업 중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본국 법령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형태에 상응하는 업종을 기재

주2)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본비율

주3) 신청일 기준 신용공여 약정이 체결된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의 상호(법인명)를 모두 기재

주4) 업무용 계좌가 다수일 경우 모든 업무용 계좌를 기재하고,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계좌를 '주계좌' 항목에 별도 표기

주5)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1-2조제5호의 은행간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지침 제1-2조제3호 따른 동일 그룹의 상호(법인명)를 모두 기재

- 〈첨부서류〉
1.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
 3.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5. 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업무용외화계좌) 및 내국통화 계좌(업무용원화계좌) 정보
 7. 은행간시장 참여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8.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의무약약서

I. 약약의 내용

1. 신청기관명^{주1)} :

2. [신청기관명(직접 기재)] 은(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사항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약한다.

II.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

1. 일반 의무

- (1) (부당행위 금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보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침 제4-2조, 제5장 및 제6장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업무용계좌)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3조에 따라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침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4) (건전성 규제 및 감독)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침 제5장에서 정하는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고, 지침 제6장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은행간시장 거래

- (1) (업무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1조에 따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과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은행간시장 거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통화종류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된다.

주1) 이 서식에 신청기관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호(법인명)과 동일하게 기재

가.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나.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

(2) **(확인의무의 면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간시장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침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거래 절차)**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간시장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침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이하 “국내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의무”라고 한다)하여야 한다.

3. 대고객 거래

(1) **(업무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1조에 따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자(이하 “고객”이라고 한다)와는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대고객 거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통화종류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된다.

가.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나.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

(2) **(확인의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대고객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침 제4-1조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각 목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나. 고객의 거래자금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쳐 동일 명의 외화계좌와 원화계좌 간에 예치·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다. 고객의 거래가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대행기관의 지정

(1) **(대행기관의 지정)**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1-2조제4호 및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에 따른 선도은행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기관

(2) (대행업무 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20조)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자본거래 특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대행기관과 지침 제3-1조에 따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침 3-2조제3항의 국내 외국환중개회사 경우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서명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서명)

대행기관지정·변경보고서				처리기간
위탁기관 ^{주1)}	상호(법인명)		법인소재국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록일	년 월 일 / <input type="checkbox"/> 등록신청예정		
대행기관 ^{주2)} (수탁기관)	기존	상호(법인명)		보고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신규	상호(법인명)		
		업무대행내용		
		계약체결예정일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업무대행내용		
		계약체결예정일		년 월 일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input type="checkbox"/> 종료 / <input type="checkbox"/> 갱신		
		<input type="checkbox"/> 종료 / <input type="checkbox"/> 갱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대표자)			(서명)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 귀하				

주1) 상호(법인명), 법인소재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하게 기재

주2) 대행기관은 복수로 지정 가능

- 〈첨부서류〉
1. (신규)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신규) 기타 업무대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